

선	기관의 장
람	

제1446호

2026년 9월 22일(화)

- 차 례 -

입 법 예 고

제2026-1416호	「강화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입법예고	
제2026-1417호	「강화군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18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2026-1422호	「강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0

공 고

제2026-1364호	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 [농어촌도로303호선 (송산)도로확포장공사]	- 49
-------------	--	------

입법 예고

강화군 공고 제2026-1416호

**「강화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강화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강 화 군 수**1. 개정 조례명 : 강화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 개정 이유**

-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감면 추진계획에 따라 주민등록 등·초본 등 44종의 발급수수료 감면 조항 신설
- 상위법령 등에 따른 수수료 관련 업무명 용어 정비

3. 주요내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조항 신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의거하여 수수료 감면 대상에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서류(44종) 발급 수수료 면제 조항 신설

- 개정 조례(안): 제7조 제1항 제6호 신설하여 감면 근거 마련

제7조(수수료의 면제 등) ① (생략)

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각종 증명 등을 발급하는 경우. 다만, 개별 법령에 따라 감면이 불가능한 각종 증명 등은 제외한다.

- [별표 1] “각종 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의 업무명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정비
-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및 용어 정비

4. 개정 조례안 : 별도 첨부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12일까지 강화군수(세무회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조례 개정안	찬·반 여부 및 사유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방법 등
 - 제출 방법: 팩스 또는 전자우편
 - 보내실 곳
 - 1) 팩스: 032-930-3634
 - 2) 전자우편(이메일): sunyra@korea.kr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세무회계과 세정팀(☎032-930-32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공청회 개최계획 : “개최계획 없음”

강화군 조례 제 호

강화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한 필요한”을 “관하여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 중 “수리 및”을 “수리(受理),”로, “정보공개에 대한”을 “정보공개”로, “것 외에”를 “것을 제외하고”로 한다.

제3조 중 “등”을 “등의”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제3조 별표 1”을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등에 있어”를 “등을”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징수 및 납부 방법) ① 수수료는 군 수입증지를 각종 증명 등에 표시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전자적 민원처리를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제1호 중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를 “발급·처리되기 전에 신청자가”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수수료의 감면 등)”을 “(수수료의 면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을 “자체 행정목적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반장의 행정목적상 필요에 따른”을 “반장이 행정목적상 필요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면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제기 등의 금액”을 “수수료 납부”로 한다.

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각종 증명 등을 발급하는 경우. 다만, 개별 법령에 따라 감면이 불가능한 각종 증명 등은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상자가 본인(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에 관한 각종 증명 등을 신청하고, 해당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면제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제3조 관련)

(단위: 원)

업 무 명	기준	수수료	비고
(증 명)			
1) 공장등록증명서	1통	1,000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전자민원(인터넷) 신청 시	1통	800 (무료)	
3) 자동차에 관한 각종 증명	1통	1,100	
4)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필지	800	
5) 개별주택가격확인서	1통	800	
6) 공동주택가격확인서	1통	800	
7)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컬러 발급 시	1통	1,000 (1,500)	
8)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1건	800	
9) 그 밖의 시설·공부 등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1건	350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확인 등)			
1. 일반행정 관계			
1)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1건	신규 5,000 계속 3,000	
2)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인)	1건	20,000	
3)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법인)	1건	30,000	
4)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1건	800	
5) 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	10,000	
6)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재교부	1건	800	
7)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1건	800	
8) 그 밖의 각종 인·허가 및 신고 확인서 등 재교부 신청	1건	800	

업 무 명	기준	수수료	비고
2. 농수산 관계			
1) 어업면허 신청	1건	5,000	
2)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1건	3,000	
3) 어업권(지분) 이전 인가 신청	1건	4,000	
4) 어업권 분할 인가 신청	1건	2,500	
5) 어업권 변경 인가 신청	1건	3,000	
6)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1건	1,000	
7)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신청	1건	1,000	
8)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1건	800	
9) 연안어업 허가	1건	2,500	
10) 구획어업 허가	1건	4,500	
11) 시설물 철거의무 면제신청(연장신청)	1건	3,000	
12) 어업허가 유예	1건	1,500	
13) 어업허가사항(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500	
14) 어업신고	1건	1,500	
15) 허가어업 재개신고	1건	1,000	
16)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1건	3,000	
17)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의 재발급	1건	1,000	
18) 어업면허증, 관리선사용지정증(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	1건	1,000	
19) 내수면어업(정치망어업) 면허신청	1건	9,000	
20) 내수면어업(공동어업) 면허신청	1건	7,500	
21) 내수면어업 허가신청	1건	5,000	

업 무 명	기준	수수료	비고
22) 낚시어선업 신고	1건	2,500	
23) 양식업 허가신청(육상해수양식업, 육상등 내수양식업)	1건	4,000	
24)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	
25)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	
26)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1,500	
27) 양식업면허 신청	1건	5,000	
28) 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1건	3,000	
29) 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	1건	4,000	
30) 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	1건	2,500	
31) 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	1건	3,000	
32) 양식업권 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1건	800	
3. 상공 관계			
1)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1건	2,000	
4. 건설안전 관계			
1)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실시			
가)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정원 5명 이하의 배	1건	550	
나)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정원 6명 이상 10명 이하의 배	1건	1,050	
다)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정원 11명 이상 20명 이하의 배	1건	1,500	
라)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정원 21명 이상의 배 및 추진기관을 설치한 배	1건	2,400	

업 무 명	기준	수수료	비고
5. 보건의료 관계			
1) 의료기관 개설 허가(부속 의료기관 포함)	1건	100,000	
2) 의료기관(부속 의료기관 포함)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1건	40,000	
3) 의료기관 개설 신고(부속 의료기관 포함)	1건	40,000	
4) 의료기관(부속 의료기관 포함)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1건	20,000	
5)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양도·양수신고 포함)	1건	10,000	
6) 안경업소 개설 등록 신청	1건	10,000	
7)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1건	10,000	
6. 문화체육 관계			
1) 공연장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1건	등록10,000 변경 5,000	
2) 테마파크업 허가(신고) 신청			
가) 종합테마파크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1건	60,000	
나) 종합테마파크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1건	30,000	
다) 일반테마파크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1건	50,000	
라) 일반테마파크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1건	15,000	
3) 기타테마파크업 신고	1건	30,000	
4) 기타테마파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5,000	
5)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1건	신 규 30,000 변 경 10,000	
6) 음악산업 관련법			
가)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1건	20,000	

업 무 명	기준	수수료	비고
나)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1건	20,000	
다)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	
라)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1건	10,000	
7) 게임산업 관련법			
가) 일반 게임제공업 허가신청	1건	20,000	
나)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1건	20,000	
다)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	
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또는 신고	1건	20,000	
마) 게임산업 관련업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신청	1건	5,000	
8) 비디오물 관련법			
가)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1건	20,000	
나)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	
다)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물배급업 신고	1건	20,000	
라)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물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	
9) 영화 관련업			
가) 영화업 신고	1건	20,000	
나) 영화업 변경신고	1건	10,000	
다)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1건	5,000	
라)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1건	20,000	
10)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변경신고)	1건	신규30,000 변경10,000	

업 무 명	기준	수수료	비고
7. 교통행정 관계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1건	6,000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변경) 신고	1건	1,500	

※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표준금액으로 징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제156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군이 징수하는 수수료에 <u>관한 필요한</u>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관하여 필요한</u> ----- -----.
제2조(적용 범위)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u>수리</u> 및 등록, 지정, 확인(이하 “각종 증명 등”이라 한다) 및 <u>정보공개에 대한</u>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u>것</u> 외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2조(적용 범위) ----- ----- ----- ----- <u>수리(受理),</u> ----- ----- ----- <u>정보공개</u> ----- ----- ----- <u>것을 제외하고</u> ----- -----.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각종 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 ----- <u>등의</u> ----- ----- -----.
제4조(징수기준) ① <u>제3조 별표 1</u> 에 따른 각종 증명 등을 같은 것으로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함께 기재하여 발급(수리, 등	제4조(징수기준) ① <u>별표 1</u> ----- ----- ----- ----- -----

록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각종 증명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③ 자동차에 관한 각종 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건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1통에 여러 건의 각종 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방법으로 징수하고, 군 수입증지를 각종 증명 등의 발급신청서, 신고서 또는 발급서류 등에 인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

-----.

② (현행과 같음)

③ ----- 등을

-----.

제5조(징수 및 납부 방법) ① 수수료는 군 수입증지를 각종 증명 등에 표시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전자적 민원처리를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

제6조(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각종 증명 등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2. (생략)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
3. 국가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이 행정목적으로 각종 증명등을 문서로 발급 요청하는 경우와 각종 증명 등의 발급기관인 군 및 읍·면이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하여 발급하는 경우
4. 이장, 반장의 행정목적상 필요에 따른 공부를 열람 또는 발급하는 경우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

금, 신용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

--.

1. ----- 발급·처리되기 전에 신청자가 -----

2. (현행과 같음)

제7조(수수료의 면제 등)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

----- 자체 행정목적상 -----

4. --- 반장이 행정목적상 필요하여 -----

5. -----

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 다. (생략)

<신 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대상자는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위임받은 자의 신청을 포함한다)에 관한 각종 증명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각종 증명 등에는 인증계기 등의 금액 표시란에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면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가. ~ 다. (현행과 같음)

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각종 증명 등을 발급하는 경우. 다만, 개별 법령에 따라 감면이 불가능한 각종 증명 등은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상자가 본인(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에 관한 각종 증명 등을 신청하고, 해당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면제한다.

③ -----
----- 수
수료 납부 -----

-----.

<삭 제>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강화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 건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 대		

행정규제 사전심사 결과

1. 자치법규명	「강화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관련법령 등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
3. 검토내용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민원서류의 수수료 면제 근거를 신설하고, 상위법령 등에 맞추어 별표 1의 수수료 징수 민원 업무명과 그 밖의 자구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 안 제7조제1항제6호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각종 증명 등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기존에 민원인이 부담하던 수수료를 경감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주민에게 새로운 의무나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는 사항으로서 신설·강화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 또한 부서 요청서에 따르면 별표 1의 “각종 증명 등 수수료”에 규정된 수수료 징수 민원 업무명을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그 밖의 자구 및 용어를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는 주민·사업자에게 새로운 허가·신고·제출의무 또는 금전적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이 아니라 관련 명칭과 표현을 정비하는 사항이다. ○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수수료를 면제하여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민원 업무명 및 자구·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신설·강화되는 행정규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제출의견	○ 행정규제 해당 없음

5. 심사담당자

감사법무담당관 법무팀 임희정(3403)

강화군 공고 제2026-1417호

「강화군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강화군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강 화 군 수

1. 조례명: 강화군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 상담 권장 시간 설정 조항 신설 및 조문 자구·용어 정비

3. 주요내용

-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상담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하고, 권장 시간 초과 또는 폭언·모욕·성희롱 시 사유 고지 후 상담 종료 가능
- 법령 제정·개정 업무 지침에 따라 자구 및 용어 정비

4. 개정 조례안: 별도 첨부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12일까지 강화군수(민원지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조례 개정안	찬·반 여부 및 사유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방법: 우편 또는 팩스, 전자우편
- 보내실 곳
 - 1) 주소: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강화군청 민원지적과)
 - 2) 팩스: 032-930-3660
 - 3) 전자우편(이메일): tadah1@korea.kr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민원지적과(☎032-930-32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공청회 개최계획 : “개최계획 없음”

강화군 조례 제 호

강화군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란”을 “이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속되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악성민원” 이란”을 ““악성민원”이란”으로, “성희롱, 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인 민원 등”을 “협박·모욕·성희롱,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중복 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 방해 행위 등 공무원 등의 정상적인 민원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민원”으로 한다.

1. 공무원
2. 공무원직근로자
3. 기간제근로자

제4조 중 “강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를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악성민원 등”을 “악성민원”으로, “필요한”을 “필요한 보호 및”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상담 권장 시간 설정 및 종료) ① 군수는 민원인과의 상담(전화 또는 면

담)에 대한 1회당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한다. 다만, 민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권장 시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

② 민원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계속하여 공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공무원 등은 상담 시작 후 15분이 지나면 상담 종료를 예고하고, 20분이 경과하면 상담을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권장 시간을 달리 설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상담 종료를 예고 및 종료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공무원 등은 상담 중 민원인이 반복적·지속적으로 욕설, 헐박 등 폭언을 하거나 모욕 또는 성희롱을 한 경우 해당 사유를 민원인에게 알린 후 전화 또는 면담을 종료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안전시설 확충)”을 “(안전시설 및 안전장비 확충)”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를 “설치·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CCTV”를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시설”을 “시설 및 장비”로 한다.

2.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웨어러블 캠 등)

3. 호출장치, 보호조치음성안내 및 녹음전화

제8조제1항 중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를 “전문기관 또는 심리상담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통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를 “따라”로, “지원할”을 “받은 공무원 등에게 의료비를 중복하여 지원할”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보호위원회”를 “등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해 강화군 공무원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하여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5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 여부, 방법, 기준, 비율 및 지원금액 등 제12조제1항 중 “9명 이내로 구성하며”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 신청 공무원”을 “지원을 신청한 공무원 등의”로, “법률지원담당”을 “법률지원업무 담당”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를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직무”를 “업무”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때”를 “경우”로, “있을”을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적 위원”을 “재적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의 제목 “(수당 등)”을 “(수당 및 여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원 등에게”를 “위원에게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로, “수당과”를 “수당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강화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 ----- ----- ----- ----- -----.
제2조(정의) ① “공무원 등”이란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이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 -----.
1.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1. 공무원
2. 공무원 근로자	2. 공무원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3. 기간제근로자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② “악성민원”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성희롱, 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인 민원 등을 말한다.	② “악성민원”이란 ----- ----- 협박·모욕·성희롱,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중복 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 방해 행위 등 공무원 등의 정상적인 민원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제4조(군수의 책무) 강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악성민원
등으로부터 공무원 등이 안전하
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
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민원---.

제4조(군수의 책무) 강화군수(이
하 “군수”라 한다)-- 악성민원-

 ----- 필요한 보
호 및 -----.

제5조의2(상담 권장 시간 설정 및
 종료) ① 군수는 민원인과의 상
담(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
당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한다.
다만, 민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권장 시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
다.

② 민원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계속하여 공무를 방해하
는 경우에 공무원 등은 상담 시
작 후 15분이 지나면 상담 종료
를 예고하고, 20분이 경과하면
상담을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권장 시간을
달리 설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
라 상담 종료의 예고 및 종료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공무원 등은 상담 중 민원인
이 반복적·지속적으로 욕설,
협박 등 폭언을 하거나 모욕 또

제6조(안전시설 확충) 군수는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과 안전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1.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CC TV

2. 착용형 기기(웨어러블 캠)

3. 비상벨

4. 그 밖에 군수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8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5조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2호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③ (생략)

제10조(지원결정) ① (생략)

는 성희롱을 한 경우 해당 사유를 민원인에게 알린 후 전화 또는 면담을 종료할 수 있다.

제6조(안전시설 및 안전장비 확충) -----

----- 설치·운영-----.

1.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2.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웨어러블 캠 등)

3. 호출장치, 보호조치음성안내 및 녹음전화

4. -----

----- 시설 및 장비

제8조(지원방법) ① ----- 전문기관 또는 심리상담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통하여 -----
-----.

② -----
----- 따라 -----

----- 받은 공무원 등에게 의료비를 중복하여 지원할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지원결정) ① (현행과 같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제11조에 따른 강화군 공무원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강화군 공무원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제2호 및 제4호에 대한 지원방법, 지원기준, 지원율, 지원금액 등에 관한 사항

2. (생략)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 당연직 위원은 지원신청 공무원 소속 부서장, 감사법무담당관, 총무과장, 민원지적과장, 법률지원담당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음)

② -----

----- 등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

-----.

제11조(위원회 설치) -----
----- 위하여 위원회-----
-----.

1. 제5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 여부, 방법, 기준, 비율 및 지원금액 등

2.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

② -----

----- 지원을 신청한 공무원 등의 -----

법률지원업무 담당-----

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 3. (생략)

③ (생략)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생략)

제14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

--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업무 담당-----.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

-- 업무-----.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회의) ① -----
----- 경우 -----

-- 있는 -----.

② ----- 재적위원 -----

-----.

③ -----

-----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의 인권을 보호하고, 고소·고발, 수사, 재판 중인 사안 등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15조(수당 등)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에는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수당 및 여비) -----
----- 위원에게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 수당 및 -----
----- . <단서 삭제>

<삭 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자치법규안 내용	의견	비고

강화군 공고 제2026-1422호

「강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강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강 화 군 수

1. 개정 조례명: 강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자활기금이 법정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2026.12.31.까지)을 삭제하여 자활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자활기금의 존속 기한 삭제(안 제2조의 2)
- 대여 주체 정비 및 연체이자율 구체화(안 제8조제2항, 제3항)
- 임대보증금 지원 기준 신설(안 제8조의2)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6일까지 강화군수(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조례 개정안	찬·반 여부 및 사유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방법 등

- 제출 방법: 팩스 또는 전자우편
- 보내실 곳

1) 팩스: 032-930-3346

2) 전자우편(이메일): ek891030@korea.kr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복지정책과(☎ 032-930-33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공청회 개최계획 : “개최계획 없음”

강화군 조례 제 호

강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2. 군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기금의 운용수익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용도(이하 “사업 등”이라 한

다)에 사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상담, 자격증 취득 등 사회복지서비스사업
3.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점포 임대보증금 대여 사업
4.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사업
5.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기능 보강 사업
6. 그 밖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14조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관리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운용·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 예치
2.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통합계정으로의 예탁
3. 군수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④ 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갖추 두어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군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영 제26조의4제9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연구·개발·평가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제3조에 따른 용도로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등의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사업자금 대여) ① 영 제26조의4제4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이내에 균등분할하여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지난 뒤에도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활기금 예치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 이자율의 50퍼

센트를 연체이자로 적용한다.

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3. 제7조에 따른 사업 등의 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9조(점포 임대보증금 대여) ① 군수는 제3조제3호에 따라 자활기업 또는 자활근로사업단별로 1억원의 범위에서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포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로 하되, 총 대여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은 5년 거치 후 5년 이내에 균등분할하여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리 차이의 범위에서 연 5퍼센트까지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을 받는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1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드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관리 심의)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제1항의 심의는 「강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13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강화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관계 규정의 적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강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자활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따 른 ----- 운용· 관리----- -----.
제2조(기금의 재원)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군 <u>이외의</u> 자로부터의 출연금	2. -- <u>외의</u>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u>금융기관 등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u>	4. 「 <u>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1호에 따른 <u>금융회사등</u> (이하 “ <u>금융회사등</u> ”이라 한다) 또는 다른 <u>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u>
5. (생략)	5. (현행과 같음)
6. <u>자활근로 실시결과</u> 발생하는 수익금	6. <u>자활근로의 실시 결</u> ----- -----
7. 기금의 <u>운용수익금</u>	7. ---- <u>운용수익</u>
<u>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u>	<u><삭 제></u>

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용도(이하
“사업 등”이라 한다)에 사용한
다.

1. (생 략)

<신 설>

4.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상담, 자격
증 취득 등 사회복지서비스사
업

5.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의
전세 점포 임대 지원 사업

6. (생 략)

7.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기능 보강 사업

8. (생 략)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
금은 제13조에 따라 수립된 기
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관리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

제3조(기금의 용도) -----

---.

1. (현행과 같음)

3.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의 점포 임대보증금 대여 사
업

2. -----

-- 자활 역량 강화---

<삭 제>

4. (현행 제6호와 같음)

5. -----

-- 자활사업실시기관---

6. (현행 제8호와 같음)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

--- 제14조-----

---.

② -----

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영·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생략)

2.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른 통합기금으로의 전출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른 신설, 2020.11.26.]

3. 군수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중전 제4조제3항제2호에서 이동, 2020.11.26.]

④ (생략)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내에 거주하는 개인이거나 소재를 둔 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

--- 별도로 개설하여 운용·관리하되-----

-----.

③ -----

-----.

1. (현행과 같음)

2.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

3. ----- 기금증식사업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군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
-----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

·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영 제
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생 략)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
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 복지서비스를 제
공하는 기관·단체

5. 영 제26조의4에 따라 자활사
업의 개발을 위하여 연구 등
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
관·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의 개인·
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등의 변경 승인) 기금
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
시의 사업 등을 변경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제8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제1호에 따라 자
활기업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

10호-----

2. (현행과 같음)

3. 영 제12조제1항-----

4. -----

---- 사회복지서비스-----

5. 영 제26조의4제9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연구·개발·평가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
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지
원대상자가 제3조에 따른 용도
로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
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등의 변경 승인) ----

----- 변경하려는 ----

-----.

제8조(사업자금 대여) ① 영 제26
조의4제4호에 따른 자활기업 -

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
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
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
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
공동체는 5년 거치 5년 내 균등
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
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
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지난 뒤
에도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중은행 연체금리를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
은 자활기업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생략)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
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
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
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
는 경우

3. 제7조에 따른 사업 등의 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

② ----- 대여받은 자활기
업은 ----- 후 5년 이내에
균등분할하여 -----
-- 일시상환하여야 ---.

③ -----

자활기금 예치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에 따른 연체 이자율의 50
퍼센트를 연체이자로 적용한다.

④ -----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
----- 상환기한 전이라도 그
대여받-----
-----.

1. (현행과 같음)

2. ----- 대여받은 날부터
----- 이내에
사업-----

3. -----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9조(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여 자금 간에 금리차이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신 설>

외의 -----

제9조(점포 임대보증금 대여) ①

군수는 제3조제3호에 따라 자활기업 또는 자활근로사업단별로 1억원의 범위에서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포의 임대차 계약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로 하되, 총 대여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은 5년 거치 후 5년 이내에 균등분할하여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리 차이의 범위에서 연 5퍼센트까지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을 받는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제10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 7호 따른 신용보증에 드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신 설>

제11조(기금의 운용심의) ① 기금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1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 7호에 -----

제12조(기금의 운용·관리 심의)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는 「강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4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삭 제>

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강화군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는 강화군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③ 삭제

제12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생략)

제13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기금의 운용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강화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신설 2021.12.31.>

제13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 운용·관리를 -----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강화군의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강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강화군의회의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삭 제>

제15조(관계 규정의 적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강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강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자치법규안 내용	의견	비고

부서별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 평가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서명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강화군 공고 제2026-1364호

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공고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6. 9. 22.

강 화 군 수

1. 노선 지정 내용

구분	읍면	도로의 종류	노선명	노선번호	도로구간		총연장	주요경과지	개발계획		지정사유
					기점	종점			도로너비(m)	포장너비(m)	
당초	양사면	농도	서송선	양사303	서사초교	송산	1.5Km	인화리	9.0	9.0	
변경	양사면	농도	서송선	양사303	서사초교(인화리 334-1)	송산(인화리 284-2)	1.5km (0.35Km)	인화리	9.0	9.0	농어촌도로 303호선(송산)도로확포장공사(3구간)시행 L=355m, A=3,975㎡

2. 노선지정 변경사유:

⇒ 분할측량 사항 반영 등

3.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주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4. 사업시행기간 : 노선지정공고일 ~ 2027.12.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과 같음.
6. 설계도서, 자금계획, 용지도 등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고시일로부터 14일)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청 (도로교통과, ☎ 032-930-3474)

위 치 도





편입용지 집계표 (변경)

◆ 사업명 : 농어촌도로 303호선(송산) 도로확장공사 (3구간)

구 분		합 계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비 고
			국 유 지		공 유 지		사 유 지		
			필지 / 면적(㎡)	필지 / 면적(㎡)	필지 / 면적(㎡)	필지 / 면적(㎡)			
합 계	당 초	45 / 3,722	2 / 866	7 / 197	36 / 2,659				
	변 경	47 / 3,975	5 / 848	7 / 188	35 / 2,939				
전	당 초	5 / 240	0 / 0	0 / 0	5 / 240				
	변 경	6 / 241	0 / 0	0 / 0	6 / 241				
면	당 초	14 / 895	0 / 0	1 / 45	13 / 850				
	변 경	13 / 892	0 / 0	1 / 45	12 / 847				
목 장 용 지	당 초	1 / 71	0 / 0	0 / 0	1 / 71				
	변 경	1 / 72	0 / 0	0 / 0	1 / 72				
임 아	당 초	3 / 724	0 / 0	0 / 0	3 / 724				
	변 경	2 / 828	0 / 0	0 / 0	2 / 828				
대	당 초	1 / 1	0 / 0	0 / 0	1 / 1				
	변 경	1 / 1	0 / 0	0 / 0	1 / 1				
도 로	당 초	19 / 925	0 / 0	6 / 152	13 / 773				
	변 경	19 / 1,093	0 / 0	6 / 143	13 / 950				
구 거	당 초	2 / 866	2 / 866	0 / 0	0 / 0				
	변 경	5 / 848	5 / 848	0 / 0	0 / 0				

용 지 조 서 (변경)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 당초: 적색, 변경: 녹색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면적면적 (㎡)	잔여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지 분	성 명	주 소	권리의 관계내용	
1	인화리	334-1	도	1,370	39	1,331	공	강화군					
1	인화리	334-1	도	1,370	-	1,370	공	강화군					분할
1-1	인화리	334-3	도	39	39	-	공	강화군					분할
2	인화리	357-3	도	74	74	-	김*재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140, ***동***호 (서창동, 더포레스트)	4/6				
							김*순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서사길41번길 **	1/6				
							김*순	인천광역시 남동구 맥벌로227번길 76, *동***호 (만수동, 효성상아맨션)	1/6				
2	인화리	357-3	도	74	74	-	김*재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140, ***동***호 (서창동, 더포레스트)	4/6				
							김*순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서사길41번길 **	1/6				
							김*순	인천광역시 남동구 맥벌로227번길 76, *동***호 (만수동, 효성상아맨션)	1/6				
3	인화리	357-5	답	609	39	570	김*재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140, ***동***호 (서창동, 더포레스트)	4/6				
							김*순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서사길41번길 **	1/6				
							김*순	인천광역시 남동구 맥벌로227번길 76, *동***호 (만수동, 효성상아맨션)	1/6				
3	인화리	357-5	답	571	-	571	김*재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140, ***동***호 (서창동, 더포레스트)	4/6				분할
							김*순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서사길41번길 **	1/6				
							김*순	인천광역시 남동구 맥벌로227번길 76, *동***호 (만수동, 효성상아맨션)	1/6				
3-1	인화리	357-11	답	38	38	-	김*재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140, ***동***호 (서창동, 더포레스트)	4/6				분할
							김*순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서사길41번길 **	1/6				
							김*순	인천광역시 남동구 맥벌로227번길 76, *동***호 (만수동, 효성상아맨션)	1/6				

용 지 조 서 (변경)

인천광역시 강화군 암사면 인화리

※ 당초: 적색, 변경: 녹색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면적면적 (㎡)	잔여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지 분	성 명	주 소	권리의 관계내용	
4	인화리	357-6	답	283	89	194	민·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대로120번길 10. *동***호 (작전동, 한양아파트)		요역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암사면 인화리 360-2, 360-4, 360-11	지역권	
4	인화리	357-6	답	195	-	195	민·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대로120번길 10. *동***호 (작전동, 한양아파트)		요역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암사면 인화리 360-2, 360-4, 360-11	지역권	분할
4-1	인화리	357-12	답	88	88	-	민·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대로120번길 10. *동***호 (작전동, 한양아파트)		요역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암사면 인화리 360-2, 360-4, 360-11	지역권	분할
5	인화리	산528	구	1,701	632	1,069	국	농림축산식품부					
5	인화리	297-2	구	770	-	770	국	농림축산식품부					등적전환 분할
5-1	인화리	297-3	구	229	229	-	국	농림축산식품부					등적전환 분할
5-2	인화리	297-4	구	39	39	-	국	농림축산식품부					등적전환 분할
5-3	인화리	297-5	구	334	334	-	국	농림축산식품부					등적전환 분할
5-4	인화리	297-6	구	5	-	5	국	농림축산식품부					등적전환 분할
5-5	인화리	297-7	구	30	-	30	국	농림축산식품부					등적전환 분할
5-6	인화리	297-8	구	168	-	168	국	농림축산식품부					등적전환 분할
6	인화리	355	답	1,719	166	1,553	조·훈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정동 **					
6	인화리	355	답	1,554	-	1,554	조·훈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정동 **					분할
6-1	인화리	355-2	답	165	165	-	조·훈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정동 **					분할
7	인화리	354-2	답	30	30	-	국·분	인천광역시 강화군 암사면 인화리 ***					
7	인화리	354-2	답	30	30	-	국·분	인천광역시 강화군 암사면 인화리 ***					

용 지 조 서 (변경)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 당초: 적색, 변경: 녹색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면적면적 (㎡)	잔여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지 분	성 명	주 소	권리의 관계내용	
8	인화리	354-1	도	60	43	17	국·봉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					
8	인화리	354-1	도	21	-	21	국·봉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					분할
8-1	인화리	354-3	도	39	39	-	국·봉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					분할
9	인화리	353-1	답	876	100	776	우·식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우길로83번길 12, ***동***호 (동춘동, 건영아파트)					
9	인화리	353-1	답	775	-	775	우·식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우길로83번길 12, ***동***호 (동춘동, 건영아파트)					분할
9-1	인화리	353-3	답	101	101	-	우·식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우길로83번길 13, ***동***호 (동춘동, 건영아파트)					분할
10	인화리	353-2	도	10	10	-	이·원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					
10	인화리	353-2	도	10	10	-	이·원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					
11	인화리	352	답	1,478	75	1,403	신·정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191-14, ***동***호 (현대아파트)		서강화농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강화대로 1215 (내가치점)	근자당권	채무자: 김용길
11	인화리	352	답	1,403	-	1,403	신·정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191-14, ***동***호 (현대아파트)		서강화농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강화대로 1215 (내가치점)	근자당권	분할
11-1	인화리	352-1	답	75	75	-	신·정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191-14, ***동***호 (현대아파트)		서강화농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강화대로 1215 (내가치점)	근자당권	분할
12	인화리	350-1	답	1,451	130	1,321	김·택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로 ***-*** (대흥동)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75 (강화군지부)	근자당권 지상권	
12	인화리	350-1	답	1,321	-	1,321	김·택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로 ***-*** (대흥동)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75 (강화군지부)	근자당권 지상권	분할
12-1	인화리	350-3	답	130	130	-	김·택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로 ***-*** (대흥동)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75 (강화군지부)	근자당권 지상권	분할
13	인화리	350-2	도	16	4	12	공	강화군					
13	인화리	350-2	도	13	-	13	공	강화군					분할
13-1	인화리	350-4	도	3	3	-	공	강화군					분할

용 지 조 서 (변경)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 당초 : 적색, 변경 : 흑색

[illegible]

용 지 조 서 (변경)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 당초: 적색, 변경: 녹색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면적면적 (㎡)	잔여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관리의 관계내용	
16	인화리	298-16	답	453	33	420	오*길	경기도 김포시 동진읍 마송1로 133. ***동***호 (마송휴먼시아매수리마을)	1/6	강화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중앙로 66	지상권	
							이*희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 253-1. ***동***호 (강화2차세광엔리치빌)	1/6				
							나*현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연미정길108번길 ***	1/6				
							김*석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연미정길108번길 ***	1/6				
							김*숙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대봉로 153. ***동***호 (대봉마을주공아파트)	1/6				
							류*숙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5길 *** (봉천동)	1/6	강화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중앙로 66	지상권 근저당권	
16	인화리	298-16	답	420	-	420	오*길	경기도 김포시 동진읍 마송1로 133. ***동***호 (마송휴먼시아매수리마을)	1/6	강화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중앙로 66	지상권	분할
							이*희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 253-1. ***동***호 (강화2차세광엔리치빌)	1/6				
							나*현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연미정길108번길 ***	1/6				
							김*석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연미정길108번길 ***	1/6				
							김*숙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대봉로 153. ***동***호 (대봉마을주공아파트)	1/6				
							류*숙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5길 *** (봉천동)	1/6	강화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중앙로 66	지상권 근저당권	
16-1	인화리	298-24	답	33	33	-	오*길	경기도 김포시 동진읍 마송1로 133. ***동***호 (마송휴먼시아매수리마을)	1/6	강화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중앙로 66	지상권	분할
							이*희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 253-1. ***동***호 (강화2차세광엔리치빌)	1/6				
							나*현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연미정길108번길 ***	1/6				
							김*석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연미정길108번길 ***	1/6				
							김*숙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대봉로 153. ***동***호 (대봉마을주공아파트)	1/6				
							류*숙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5길 *** (봉천동)	1/6	강화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중앙로 66	지상권 근저당권	

용 지 조 서 (변경)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 당초 : 적색, 변경 : 녹색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면적면적 (㎡)	잔여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지 분	성 명	주 소	권리의 관계내용	
17	인화리	298-4	도	30	30	-	오*길	경기도 김포시 동진읍 마송1로 133. ***동***호 (마송휴먼시아매수리마을)	1/6				
							이*희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 253-1. ***동***호 (강화2차세광엔리치빌)	1/6				
							나*현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연매정길108번길 ***호	1/6				
							김*석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연매정길108번길 ***호	1/6				
							김*숙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대봉로 153. ***동***호 (대봉마을주공아파트)	1/6				
							류*숙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5길 ***호 (봉천동)	1/6	강화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중앙로 66	근자당권	
17	인화리	298-4	도	30	30	-	오*길	경기도 김포시 동진읍 마송1로 133. ***동***호 (마송휴먼시아매수리마을)	1/6				
							이*희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 253-1. ***동***호 (강화2차세광엔리치빌)	1/6				
							나*현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연매정길108번길 ***호	1/6				
							김*석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연매정길108번길 ***호	1/6				
							김*숙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대봉로 153. ***동***호 (대봉마을주공아파트)	1/6				
							류*숙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5길 ***호 (봉천동)	1/6	강화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중앙로 66	근자당권	

용 지 조 서 (변경)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 당초 : 적색, 변경 : 옥색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면적면적 (㎡)	잔여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지 분	성 명	주 소	권리의 관계내용	
18	인화리	298-13	답	240	1	239	오*길	경기도 김포시 동진읍 마송1로 133. ***동***호 (마송휴먼시아매수리마을)	1/6	강화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중앙로 66	지상권	
							이*희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 253-1. ***동***호 (강화2차세광엔리치빌)	1/6	강화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중앙로 66	지상권	
							나*현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연미정길108번길 ***-	1/6				
							김*석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연미정길108번길 ***-	1/6				
							김*숙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대봉로 153. ***동***호 (대봉마을주공아파트)	1/6				
							류*숙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5길 *** (봉천동)	1/6	강화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중앙로 66	지상권 근저당권	
18	인화리	298-13	답	239	-	239	오*길	경기도 김포시 동진읍 마송1로 133. ***동***호 (마송휴먼시아매수리마을)	1/6	강화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중앙로 66	지상권	분할
							이*희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 253-1. ***동***호 (강화2차세광엔리치빌)	1/6	강화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중앙로 66	지상권	
							나*현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연미정길108번길 ***-	1/6				
							김*석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연미정길108번길 ***-	1/6				
							김*숙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대봉로 153. ***동***호 (대봉마을주공아파트)	1/6				
							류*숙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5길 *** (봉천동)	1/6	강화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중앙로 66	지상권 근저당권	
18-1	인화리	298-23	답	1	1	-	오*길	경기도 김포시 동진읍 마송1로 133. ***동***호 (마송휴먼시아매수리마을)	1/6	강화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중앙로 66	지상권	분할
							이*희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 253-1. ***동***호 (강화2차세광엔리치빌)	1/6	강화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중앙로 66	지상권	
							나*현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연미정길108번길 ***-	1/6				
							김*석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연미정길108번길 ***-	1/6				
							김*숙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대봉로 153. ***동***호 (대봉마을주공아파트)	1/6				
							류*숙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5길 *** (봉천동)	1/6	강화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중앙로 66	지상권 근저당권	

용 지 조 서 (변경)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 당초 : 적색, 변경 : 옥색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면적면적 (㎡)	잔여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지 분	성 명	주 소	권리의 관계내용	
19	인화리	298-5	도	23	13	10	오*길	경기도 김포시 동진읍 마송1로 133. ***동***호 (마송휴먼시아매수리마을)	1/6				
							이*희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 253-1. ***동***호 (강화2차세광엔리치빌)	1/6				
							나*현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연미정길108번길 ***-	1/6				
							김*석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연미정길108번길 ***-	1/6				
							김*숙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대봉로 153. ***동***호 (대봉마을주공아파트)	1/6				
							류*숙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5길 *** (봉천동)	1/6	강화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중앙로 66	근자당권	
19	인화리	298-5	도	10	-	10	오*길	경기도 김포시 동진읍 마송1로 133. ***동***호 (마송휴먼시아매수리마을)	1/6				분할
							이*희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 253-1. ***동***호 (강화2차세광엔리치빌)	1/6				
							나*현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연미정길108번길 ***-	1/6				
							김*석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연미정길108번길 ***-	1/6				
							김*숙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대봉로 153. ***동***호 (대봉마을주공아파트)	1/6				
							류*숙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5길 *** (봉천동)	1/6	강화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중앙로 66	근자당권	
19-1	인화리	298-21	도	13	13	-	오*길	경기도 김포시 동진읍 마송1로 133. ***동***호 (마송휴먼시아매수리마을)	1/6				분할
							이*희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 253-1. ***동***호 (강화2차세광엔리치빌)	1/6				
							나*현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연미정길108번길 ***-	1/6				
							김*석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연미정길108번길 ***-	1/6				
							김*숙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대봉로 153. ***동***호 (대봉마을주공아파트)	1/6				
							류*숙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5길 *** (봉천동)	1/6	강화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중앙로 66	근자당권	

용 지 조 서 (변경)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 당초 : 적색, 변경 : 옥색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면적면적 (㎡)	잔여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지 분	성 명	주 소	관리의 관계내용	
20	인화리	298-6	도	76	10	66	오*길	경기도 김포시 동진읍 마송1로 133. ***동***호 (마송휴먼시아매수리마을)	1/6				
							이*희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 253-1. ***동***호 (강화2차세광엔리치빌)	1/6				
							나*현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연미정길108번길 ***-	1/6				
							김*석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연미정길108번길 ***-	1/6				
							김*숙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대봉로 153. ***동***호 (대봉마을주공아파트)	1/6				
							류*숙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5길 *** (봉천동)	1/6	강화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중앙로 66	근자당권	
20	인화리	298-6	도	66	-	66	오*길	경기도 김포시 동진읍 마송1로 133. ***동***호 (마송휴먼시아매수리마을)	1/6				분할
							이*희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 253-1. ***동***호 (강화2차세광엔리치빌)	1/6				
							나*현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연미정길108번길 ***-	1/6				
							김*석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연미정길108번길 ***-	1/6				
							김*숙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대봉로 153. ***동***호 (대봉마을주공아파트)	1/6				
							류*숙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5길 *** (봉천동)	1/6	강화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중앙로 66	근자당권	
20-1	인화리	298-22	도	10	10	-	오*길	경기도 김포시 동진읍 마송1로 133. ***동***호 (마송휴먼시아매수리마을)	1/6				분할
							이*희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 253-1. ***동***호 (강화2차세광엔리치빌)	1/6				
							나*현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연미정길108번길 ***-	1/6				
							김*석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연미정길108번길 ***-	1/6				
							김*숙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대봉로 153. ***동***호 (대봉마을주공아파트)	1/6				
							류*숙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5길 *** (봉천동)	1/6	강화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중앙로 66	근자당권	

용 지 조 서 (변경)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 당초 : 적색, 변경 : 녹색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면적면적 (㎡)	잔여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명	주 소	지 분	성·명	주 소	권리의 관계내용	
21	인화리	산104-1	임	13,487	534	12,953	김*준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32길 6, ***동 ****호(용강동, 마포대원2차이편한세상)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여의도동)	근자당권	
21	인화리	산104-1	임	12,869	-	12,869	김*준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32길 6, ***동 ****호(용강동, 마포대원2차이편한세상)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여의도동)	근자당권	분할
21-1	인화리	산104-6	임	618	618	-	김*준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32길 6, ***동 ****호(용강동, 마포대원2차이편한세상)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여의도동)	근자당권	분할
22	인화리	298-10	임	250	1	249	오*길	경기도 김포시 동진로 마송1로 133, ****동***호 (마송휴먼시아매수리마을)	1/6	강화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중앙로 66	지상권	
							이*희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 253-1, ***동****호 (강화2차세관관리지발)	1/6				
							나*현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연대정길108번길 ****	1/6				
							김*석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연대정길108번길 ****	1/6				
							김*숙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대봉로 153, ***동***호 (대봉마을주공아파트)	1/6				
							홍*숙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천로5길 *** (불천동)	1/6	강화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중앙로 66	지상권 근자당권	
-	-	-	-	-	-	-	-	-	-	-	-	-	삭제

용 지 조 서 (변경)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 당초: 적색, 변경: 녹색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면적면적 (㎡)	잔여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지 분	성 명	주 소	권리의 관계내용	
23	인화리	298-15	답	470	11	459	오*길	경기도 김포시 동진읍 마송1로 133. ***동***호 (마송휴먼시아매수리마을)	1/6	강화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중앙로 66	지상권	
							이*희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 253-1. ***동***호 (강화2차세광엔리치빌)	1/6				
							나*현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연미정길108번길 ***-	1/6				
							김*석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연미정길108번길 ***-	1/6				
							김*숙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대봉로 153. ***동***호 (대봉마을주공아파트)	1/6				
							류*숙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5길 *** (봉천동)	1/6	강화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중앙로 66	지상권 근저당권	
23	인화리	298-15	답	459	-	459	오*길	경기도 김포시 동진읍 마송1로 133. ***동***호 (마송휴먼시아매수리마을)	1/6	강화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중앙로 66	지상권	분할
							이*희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 253-1. ***동***호 (강화2차세광엔리치빌)	1/6				
							나*현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연미정길108번길 ***-	1/6				
							김*석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연미정길108번길 ***-	1/6				
							김*숙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대봉로 153. ***동***호 (대봉마을주공아파트)	1/6				
							류*숙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5길 *** (봉천동)	1/6	강화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중앙로 66	지상권 근저당권	
23-1	인화리	298-25	답	11	11	-	오*길	경기도 김포시 동진읍 마송1로 133. ***동***호 (마송휴먼시아매수리마을)	1/6	강화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중앙로 66	지상권	분할
							이*희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 253-1. ***동***호 (강화2차세광엔리치빌)	1/6				
							나*현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연미정길108번길 ***-	1/6				
							김*석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연미정길108번길 ***-	1/6				
							김*숙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대봉로 153. ***동***호 (대봉마을주공아파트)	1/6				
							류*숙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5길 *** (봉천동)	1/6	강화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중앙로 66	지상권 근저당권	

용 지 조 서 (변경)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 당초: 적색, 변경: 녹색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자적면적 (㎡)	면적면적 (㎡)	잔여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지 분	성 명	주 소	권리의 관계내용	
24	인화리	산104-3	도	595	424	171	이*상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					
24	인화리	산104-3	도	595	595	-	이*상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					
25	인화리	293-1	전	2,045	6	2,039	곽*성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					
25	인화리	293-1	전	2,039	-	2,039	곽*성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					분할
25-1	인화리	293-5	전	2	2	-	곽*성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					분할
25-2	인화리	293-6	전	4	4	-	곽*성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					분할
26	인화리	산103	임	397	3	394	황*식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					삭제
-	-	-	-	-	-	-	-	-	-	-	-	-	삭제
27	인화리	산104-5	임	992	187	805	김*준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32길 6, ***동 ****호(용강동, 마포대원2차이전한세상)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여의도동)	근자당권	
27	인화리	산104-5	임	782	-	782	김*준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32길 6, ***동 ****호(용강동, 마포대원2차이전한세상)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여의도동)	근자당권	분할
27-1	인화리	산104-9	임	210	210	-	김*준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32길 6, ***동 ****호(용강동, 마포대원2차이전한세상)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여의도동)	근자당권	분할
28	인화리	294-2	전	126	13	113	곽*성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					
28	인화리	294-2	전	113	-	113	곽*성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					분할
28-1	인화리	294-4	전	13	13	-	곽*성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					분할
29	인화리	294-3	도	17	17	-	김*식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					
29	인화리	294-3	도	17	17	-	김*식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					

용 지 조 서 (변경)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 당초 : 적색, 변경 : 녹색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자적면적 (㎡)	면적면적 (㎡)	잔여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지 분	성 명	주 소	권리의 관계내용	
30	인화리	산104-2	도	83	78	5	이*상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					
30	인화리	산104-2	도	1	-	1	이*상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					매합
30-1	인화리	산104-7	도	81	81	-	이*상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					매합
30-2	인화리	산104-8	도	1	-	1	이*상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					매합
31	인화리	1239	구	4,954	234	4,720	국	농림축산식품부					매합
31	인화리	1239	구	4,500	-	4,500	국	농림축산식품부					매합
31-1	인화리	1239-3	구	241	241	-	국	농림축산식품부					매합
31-2	인화리	1239-4	구	208	-	208	국	농림축산식품부					매합
31-3	인화리	1239-5	구	5	5	-	국	농림축산식품부					매합
32	인화리	288-3	도	60	31	29	공	강화군					매합
32	인화리	288-3	도	37	-	37	공	강화군					매합
32-1	인화리	288-6	도	23	23	-	공	강화군					매합
33	인화리	288-2	전	73	62	11	유*법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					매합
33	인화리	288-2	전	9	-	9	유*법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					매합
33-1	인화리	288-4	전	62	62	-	유*법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					매합
33-2	인화리	288-5	전	2	-	2	유*법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					매합

용 지 조 서 (변경)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 당초 : 적색, 변경 : 녹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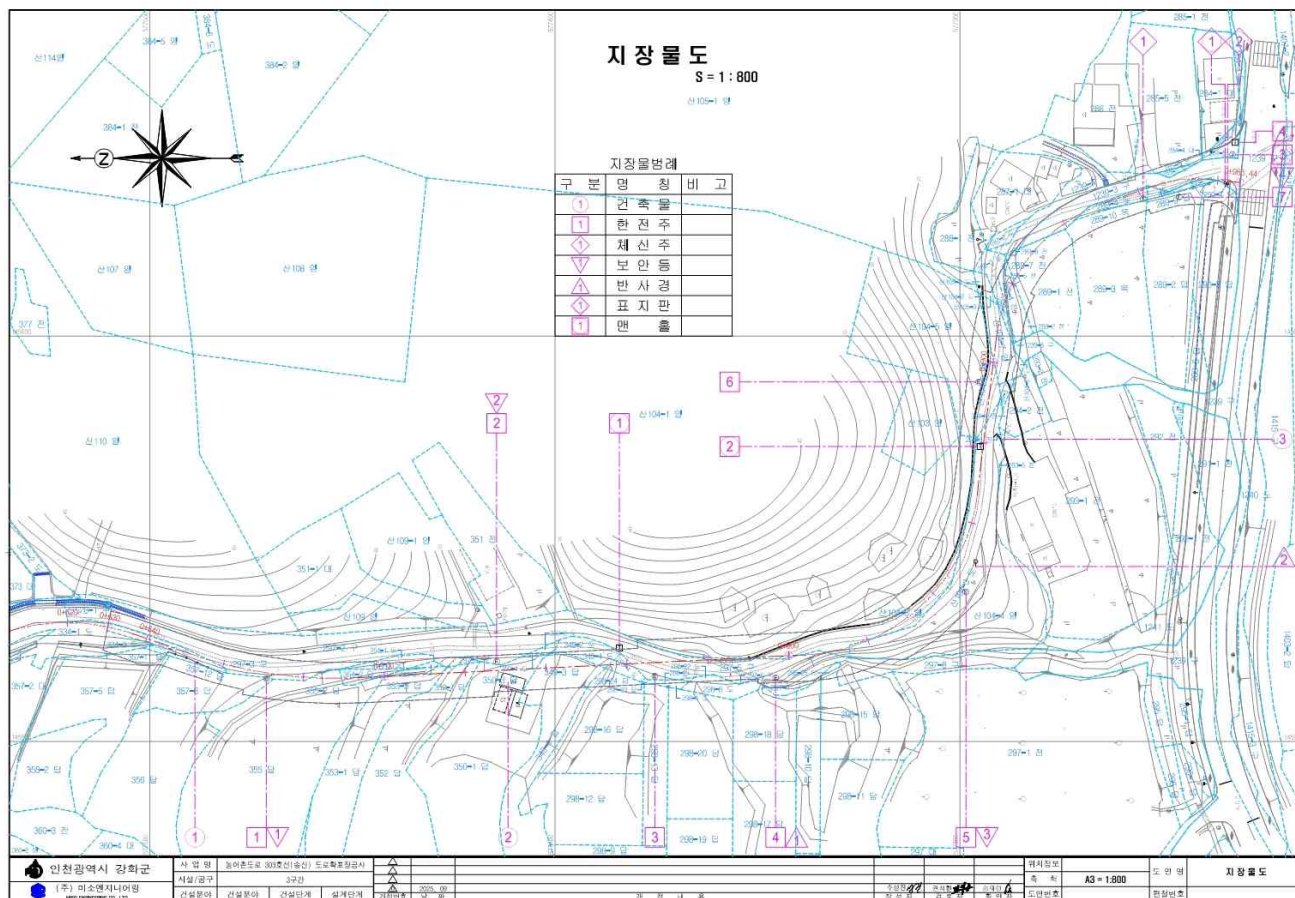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자적면적 (㎡)	면적면적 (㎡)	잔여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지 분	성 명	주 소	권리의 관계내용	
34	인화리	산105-2	도	36	9	27	허*수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 ***					
34	인화리	산105-2	도	20	-	20	허*수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 ***					폐합
34-1	인화리	산105-3	도	16	16	-	허*수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 ***					폐합
35	인화리	289-1	전	370	140	230	곽*성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					
35	인화리	289-1	전	225	-	225	곽*성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					폐합
35-1	인화리	289-7	전	141	141	-	곽*성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					폐합
35-2	인화리	289-8	전	4	-	4	곽*성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					폐합
36	인화리	289-3	목	651	71	580	곽*성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					
36	인화리	289-3	목	579	-	579	곽*성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					폐합
36-1	인화리	289-10	목	72	72	-	곽*성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					폐합
37	인화리	289-4	도	46	46	-	공	강화군					
37	인화리	289-4	도	46	46	-	공	강화군					
38	인화리	289-2	답	533	52	481	곽*성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					
38	인화리	289-2	답	481	-	481	곽*성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					폐합
38-1	인화리	289-9	답	52	52	-	곽*성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					폐합
39	인화리	289-5	도	20	20	-	김*순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					
39	인화리	289-5	도	20	20	-	김*순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					

용 지 조 서 (변경)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 당초 : 적색, 변경 : 녹색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면적면적 (㎡)	잔여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지 분	성 명	주 소	권리의 관계내용	
40	인화리	285-5	전	585	19	566	김*승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					
40	인화리	285-5	전	566	-	566	김*승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					분할
40-1	인화리	285-8	전	19	19	-	김*승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					분할
41	인화리	285-2	도	10	10	-	김*중						매입기
41	인화리	285-2	도	10	10	-	김*중						
42	인화리	290-2	도	7	7	-	공	강화군					
42	인화리	290-2	도	7	7	-	공	강화군					
43	인화리	290-3	답	426	45	381	공	강화군					
43	인화리	290-3	답	381	-	381	공	강화군					분할
43-1	인화리	290-4	답	45	45	-	공	강화군					분할
44	인화리	284-1	대	258	1	257	조*백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					
44	인화리	284-1	대	257	-	257	조*백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					분할
44-1	인화리	284-4	대	1	1	-	조*백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					분할
45	인화리	284-2	도	43	25	18	공	강화군					
45	인화리	284-2	도	18	-	18	공	강화군					분할
45-1	인화리	284-5	도	25	25	-	공	강화군					분할
합 계				당초	38,111	3,722	34,389						
				변경	3,975	3,975	-						



지 장 물 집 계 표

◆ 사업명 : 농어촌도로 303호선(송산) 도로확장공사 (3구간)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고
건 축 물	건 물	m2	35.7	
	물 타 리	m	14.4	
	석 축	m	10.4	
	수 목 (교 목)	주	17	
	수 목 (관 목)	주	29	
한	전 주	본	7	
체	신 주	본	1	
보	안 등	EA	4	
반	사 경	EA	2	
표	지 판	EA	2	
맨 홀	통 신 맨 홀	개소	3	
	상 수 (제 수 변)	개소	1	